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9 선고 2019가단5905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손성락, 송명근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주식회사 C

3. D

변 론 종 결 2021. 5. 14.

판 결 선 고 2021. 7. 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,608,216원 및 그 중 47,374,588원에 대하여 2019. 8. 17.부터 2020. 3. 27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8. 10. 5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‘피고 B’라고만 한다)와 피고 B가 주식회사 E(이하 ‘E’라고만 한다)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B, 피보험자 E, 보험가입금액 100,000,000원, 보험기간 2018. 10. 4.부터 2019. 10. 3.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약정(이하 ‘이 사건 보증보험약정’이라 하고,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 체결 당시 작성된 약정서를 ‘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’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피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다.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D 외에도 피고 주식회사 C(이하 ‘피고 C’이라고만 한다)이 기재되어 있다.

라.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은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. 원고가 공시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%이다.

마. 피고 B가 E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. 5.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, 보증인인 원고는 2019. 7. 17. E에게 47,374,5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바.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채무(이하 ‘이 사건 구상금채무’라 한다)는 2019. 8. 16.을 기준으로 원금 47,374,588원, 지연손해금 233,628원 합계 47,608,216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가. 피고 B, D에 대한 청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원리금 47,608,216원 및 그 중 원금 47,374,588원에 대하여 앞서 본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9. 8. 1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. 3. 27.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C에 대한 청구

1)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)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

(1)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,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,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(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7다82158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(갑 제3호증)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그 날인행위는 피고 C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,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또한 추정된다.

(2) 이에 대하여 피고 C은,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영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날인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, 피고 D가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, 갑 제7호증의 1(위임장,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피고 C의 상호 다음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),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, 위

위임장에는 피고 C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C은 피고 D에게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)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 부담 여부

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다23482 판결).

살피건대,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B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소결론

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피고 B,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원리금 47,608,216원 및 그 중 원금 47,374,588원에 대하여 2019. 8. 17.부터 2020. 3. 27.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대원